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위원회안)

의 안 번 호	42
------------	----

제 안 연 월 일: 2021. 3. 17.

제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의회에서 추천토록 되어있어 그에 따른 전문가를 추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개요

- 임기 및 구성
 - 임기 : 2년(연임가능)
 - 구성 : 시의원 4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협의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추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전문가 추천 기준

-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추천자

성 명	소 속	성 별	생년월일	비 고
전성균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남	1957.07.25	소방 안전관리과 교수
양종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남	1962.01.29	정밀화학과 교수

※ 자격제한사유 조회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2

나. 기타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 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구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u>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u>	<u>11명 이내</u>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